연 봉 근 로 계 약 서(재량간주근로)

주식회사퍼니글루(이하 "갑"이라 한다.)과 <u> 천인성</u> (이하 "을"이라 한다.)은 아래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며, 근로기준법 등 근로기준관계법령과 주식회사퍼니글루(이하 회사)의 취업규칙 및 제규정을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.

제1조(근무조건)

- 1) "을"의 근무부서는 (기회)로 이며, 직급은 (사원)로 한다. 다만, 업무상 필요한 경우 "갑"은 "을"의 근무부서를 변경 할 수 있다.
- 2) "을"의 직책은()이다.
- 3) "갑"은 업무의 수행수단 및 시간배분 등에 관하여 "율"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.

제2조(계약기간)

- 1) "갑"과 "을"의 근로계약기간은 $2\mathcal{O}^{22}$ 년 /월 /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. ※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로 하며 수습기간 동안 급여는 100% 지급한다. 수습에 관한 조건은 별도로 첨부한다.
- 2) "갑"은 "을"의 업무능력, 근무태도, 차기 프로젝트의 진행사항 등을 감안하여 계약기간 종료 전후 "을"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요청 할 수 있다.

제3조(연봉 적용기간)

"갑"과 "을"의 연봉 적용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개월간으로 하며, 계약기간 만료 전후 상호 합의로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.

제4조(근무시간 및 휴게시간)

- 1) 완전재량간주근로시간제□ 부분재량간주근로시간제■ : 10:00 ~ 19:00
- 2) 휴게시간 : 13:00 ~ 14:00
- 3) 근로시간 산정은 근로계약서 및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5조(근태관리)

"을"에 대한 지각, 조퇴, 결근 등의 근태사항에 있어서 징계사항은 "갑"이 정한 취업규칙에 따른다.

제6조(연봉총액 및 연봉의 구성)

1) 급여 총액은 여가

27,000,000 원 (월 2,250,000 원)으로 한다.

2) 연봉 급여 총액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. (단위 : 원)

항목	연간	월간	산출근거
기본급	23,142,489	1,928,541	연2,508시간(월209시간*12개월)*통상시급
			월209시간*통상시급
시간외수당	2,657,511	221,459	연 192시간*통상시급*1.5연장수당
			월 16시간*통상시급*1.5연장수당
비과세	1,200,000	100,000	식대 월 100,000원*12개월
	0	0	출산육아수당
	0	0	차량유지비
합계	27,000,000	2,250,000	

- * 통상시급 9,227.47 원 (기본급/209시간)
- 3) 상기 월 급여액은 해당 근무월의 익월 5일에 "을"의 은행계좌로 입금한다.
- 단, 5일이 휴일일 경우 그 전 또는 후의 가장 빠른 근무일에 입금한다.
- 4) 퇴직금은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한하여 당사의 취업규칙 및 제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.

제 7조(휴일 및 휴가)

- 1) "갑"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"을"에게 일요일을 유급주휴일을 부여한다.
- 2) "갑"은 "을"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.
- 3) "갑"은 "을"에게 경조 및 기타 특별한 경우 유급휴가를 줄 수 있으며 이는 "갑"이 정한 제 규정에 따른다.
- 4) 제2항과 제3항의 휴가는 사전 신청 후 허가를 받아 사용하며 "갑"은 필요시 휴가기간 또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.

제8조(계약의 해지)

- 1) "갑"은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불복하여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
- ② 회사의 기밀이나 중요 업무자료를 유출하거나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
- ③ 회사가 정한 정식 업무평가 또는 인사평가에서 부적격 등급을 받은 경우
- ④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부정, 불법행위를 한 경우
- ⑤ 회사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사리를 취한 경우
- ⑥ 정당한 이유 없이 3일 이상 무단결근을 한 경우
- ⑦ 기타 회사규정을 반복 위반하거나 기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2) "을"이 근로계약기간 중 퇴사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퇴사예정일 2주 이전에 부서팀장에게 알리고 인수인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. 만약 경조사나 공무상 조치 등 "을"의 부득이한 사정이 아닌 전직, 휴직 등을 이유로 인수인계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"을"의 책임으로 귀속된다.

제9조(기밀유지)

- 1) "을"은 자신의 연봉액, 인센티브 또는 보안이 필요한 사항을 타인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.
- 2) "을"은 재직 기간뿐만 아니라 퇴직 후 ($\frac{3}{2}$)년 동안 제작과 관련하여 본인이 작업하지 않은 제작DB 및 본인이 일부 작업에 참여하였더라도 작품의 공개일정상 외부에 공개되어선 안되는 제작DB를 업무상 관계없이 기기에 저장, 업로드, 인터넷 매체, 언론매체 등에 공개하거나 유출해서는 안된다.
- 3) 만약 본 조의 기밀유지를 고의 또는 과실로 지키지 않아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"을"에게 있다.

제 10조 (신의성실과 발전)

"갑"과 "을"은 신의성실과 공동체의식에 입각해 상호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상호 의견을 최대한 존중 한다.

제 11조 (기타 사항)

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등 회사의 제규정, 관련 법규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.

2022년 /월 /9일

갑 대표이사

백 창름

주 소

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330, DMC첨단산업센터 619호

을 성명 정진영 주민등록번호 COC 129- 362기 4 N 주소 생활되지 한지 한국 324 601로